# 문신사·반영구화장사법안 (윤상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872

발의연월일: 2024. 11. 26.

발 의 자:윤상현·김선교·조배숙

신성범 · 강승규 · 이헌승

조정훈 · 성일종 · 이성권

최수진 의원(10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문신 및 반영구화장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1992 년 대법원은 문신시술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보건위생에 위험이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며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비의료인 의 문신시술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음.

하지만 2022년 8월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미용 목적의 반영구화장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고, 2023년 12월부산지법(박주영 판사)에서도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와 다르고 시술 방식과 염료의 위험 감소, 사회 인식 변화, 대법원 판례 변천 등을 종합하면 눈썹 시술은 의료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특히, 문신을 의료행위로 판단했었던 일본도 지난 2020년 우리의 대법원 격인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문신은 의료행위가 아닌 것으로 최종 판결함. 이제 문신을 의료행위로 간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함. 이러한 흐름 속에 정부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규제혁신을 위해 도입한 '규제심판회의'를 열어 혁신과제에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 시술 허용'을 선정하며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였고, 보건복지부는 2024년 3월부터 시작한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 개발'연구를 통해문신사 국가시험 시행을 포함한 관련 정책을 마련할 계획을 하고 있음.

그리고 2024년 11월 보건복지부의 '문신 시술 이용자 현황 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문신이나 반영구화장 문신 시술 이용자 1천685명을 대상으로 문신 시술에 대한 인식을 설문한 결과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4.2%에 달하였고, 그 이유로 '대부분비의료인이 문신을 시술하고 있고, 제도화를 통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2.4%로 나타남.

또한, 문신을 시술받은 장소는 문신 전문숍이라는 응답이 81.0%였고, 병의원에서 시술받은 경우는 1.4%에 불과함. 사실상 문신과 반영구화장 시술은 비의료인의 시술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국민 정서에도 거부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사에 대한 자격과 업무범위, 위생관리의 무와 영업소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체계와 현실의 괴리를 줄이고 이용자의 보건위생과 종사자의 직업 의 안정성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사의 면허 요건·등록 및 결격사유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 나.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사는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문신 행위 또는 반영구화장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다.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사가 아니면 문신행위등을 하지 못하도록 함 (안 제8조).
- 라.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사가 아니면 문신행위 또는 반영구화장행위를 하는 영업소를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문신업소 및 반영구화장업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 9조).
- 마. 문신업자 및 반영구화장업자는 국민건강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관련 시설 및 장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 바.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사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 등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 사.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사는 업무 개선, 권익 증진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관련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 문신사 · 반영구화장사법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문신사·반영구화장사의 자격·면허 등에 관한 사항과 문신업소·반영구화장업소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함으로써 문신업·반영구화장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의 건강 증 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문신행위"란 바늘 등을 사용하여 인체에 독성이 없는 색소로 사람의 피부(머리피부를 포함한다)에 여러 가지 모양을 새겨 넣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반영구화장행위"란 바늘 등을 사용하여 인체에 독성이 없는 색소로 눈썹이나 아이라인 등을 새겨 넣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문신사"란 제3조에 따라 자격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 4. "반영구화장사"란 제4조에 따라 자격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 제2장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사의 면허 등

- 제3조(문신사의 면허 등) 문신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신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문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4.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문신사 면허를 받은 사람 제4조(반영구화장사의 면허 등) 반영구화장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영구화장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반영구화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4.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반영구화장사 면허를 받은 사람
- 제5조(면허의 등록)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문신사 면허

또는 제4조에 따른 반영구화장사 면허를 내줄 때에는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면허증을 내주어야 한다.

- ② 제1항의 등록대장은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사를 구분하여 따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면허의 등록과 면허증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한다.
-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문신사 또는 반영구화장사 면허를 받을 수 없다.
  -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문신사 또는 반영 구화장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
  -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범죄 경력자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
  -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5.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 6. 미성년자
  - 7. 이 법, 「공중위생관리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

- 법」,「의료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지나지 아니한 사람
- 8. 제14조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7조(문신사등의 업무범위와 한계 등) ① 문신사 또는 반영구화장사 (이하 "문신사등"이라 한다)는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문신행위 또는 반영구화장행위(이하 "문신행위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② 문신사등은 제9조에 따라 개설신고를 한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문신행위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문신사등은 보호자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문신행위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문신사등의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무면허자의 문신행위등 금지 등) ① 문신사등이 아니면 문신행위등 하지 못한다.
  - ② 문신사등이 아니면 문신사등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③ 면허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 제9조(문신업소등의 개설신고 등) ① 문신사가 아니면 문신행위를 하는 영업소(이하 "문신업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없다.

- ② 반영구화장사가 아니면 반영구화장행위를 하는 영업소(이하 "반영구화장업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없다.
- ③ 문신업소 또는 반영구화장업소(이하 "문신업소등"이라 한다)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신청인에 게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⑤ 제3항에 따른 문신업소등의 시설·장비 기준, 신고의 방법·절차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증명서 교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 ① 문신업자 또는 반영구화장업자(이하 "문신업자등"이라 한다)는 국민건강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문신행위등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매년 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방법·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11조(문신업자등의 위생관리의무 등) ① 문신업자등은 영업 관련 시설 및 장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1. 문신 또는 반영구화장기구는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을 한 기구와 멸균을 한 기구로 분리하여 보관할 것
- 2. 문신 또는 반영구화장 바늘은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지 아니할 것
- 3. 문신업소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할 것
- 4. 문신업소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넣어서 배출할 것
- 5. 「약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일반의약품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제품만을 사용할 것
-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문신업소등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 및 보건위생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
- ② 문신업자등은 문신업소등의 이용자에게 문신행위등에 사용한 재료에 대한 정보와 부작용의 위험, 사후관리와 주의사항 등의 정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 ③ 문신업자등은 면허증 및 제9조제4항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소 안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12조(폐업ㆍ휴업 및 재개의 신고 등) ① 문신업자등이 문신업소등을

- 폐업·휴업 또는 재개(再開)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문신업자등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 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3장 지도 · 감독 등

- 제13조(보고 및 출입·검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문신업자등에게 그 지도·감독에 필요한 범위에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문신업소등에 출입하여 운영 상황,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에 따라 영업장부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및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 부렁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③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운영 상황, 시설 등을 검사하거나 영업장부나 서류를 열람하는 경우 그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른다.

- 제14조(면허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문신사등이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5호, 제7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 1.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문신행위등을 한경우
  - 3. 제7조3항을 위반하여 보호자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문신행위등을 한 경우
  - 4.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
  -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문신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
  - 6.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정지처분 기간에 한정한다)
  -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문신사등의 면허를 받은 경우
  - 8. 문신업자등이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문신행위등을 한 경우
  - 9. 면허자격정지 기간에 문신행위등을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10. 문신사등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 11.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영업의 제한)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익상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문신업자등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 제16조(시정명령) 시장·군수·구청장은 문신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1. 제9조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
  - 2. 제10조에 따른 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 3.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 4.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문신행위등에 사용한 재료에 대한 정보 와 부작용의 위험, 사후관리와 주의사항 등의 정보를 이용자에게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
  - 5. 제11조제3항에 따른 면허증 및 신고증명서의 게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 제17조(문신업소등의 폐쇄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문신업자등이 제16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 1.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 2. 제9조제3항에 따른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 3. 문신업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 4. 문신업자등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문신업자등이 제2항에 따라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 금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1. 해당 영업소의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의 제거
- 2. 해당 영업소가 위법한 영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 3. 영업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조치를 한 이후 해당 조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거나 문신업자등이 정당한 사유를 들어 해당 조치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18조(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문신업자등이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에 따라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양수인·상 속인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 수인·상속인에 대해서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 인의 경우 영업을 승계할 때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 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9조(위반사실의 공표)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 및 제17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문신사등 및 문신업자등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 제4장 보칙

- 제20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1. 제14조제1항에 따른 문신사등의 면허취소
  - 2. 제17조제2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
- 제21조(자료 제공의 요청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문신업소 등의 설치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

- 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22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문신업자등에 대한 교육과 관리 감독 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업무 수행의 적절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 요구, 현장조사 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한다.
- 제23조(영업자 단체) ① 문신사등은 문신사등의 업무 개선, 권익 증진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스킨아트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장 벌칙

- 제2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문신행위등을 한 자
  - 2. 제7조제4항에 따른 문신사등의 업무범위를 벗어나 문신행위등을 한 자
  - 3.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문신사등의 면허 없이 문신행위등을 한자
  - 4.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한 자
  - 5.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문신사등의 면허 없이 문신업 소등을 개설한 자
  - 6. 제9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문신업소등을 개설한 자
  - 7. 제17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일부 시설 사용중지 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영업을 하거나 그 시설을 사용한 자 또는 같 은 조 제2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자
  - ②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신고를 한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문신행위등을 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문신사등의 면허 없이 문신사등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2. 제14조제1항에 따른 면허자격의 정지기간 중에 문신행위등을 한자
- 제2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문신업소등의 위생관리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 3.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문신행위등에 사용한 재료에 대한 정보 와 부작용의 위험, 사후관리와 주의사항 등의 정보를 이용자에게 설명하지 아니한 자

- 4.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면허증 및 신고증명서를 업소 안에 게시하지 아니한 자
- 5.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9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문신업소등의 폐업·휴업 또는 재개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신사등의 면허의 결격사유에 관한 특례)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법 시행 당시 문신행위등으로 인하여 「의료법」 제27조·제87조의 2제2항제2호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제6조제7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문신사등의 면허를 부여할 수 있다.